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박상웅 · 조은희 · 김재섭
김대식 · 송석준 · 유용원
최보운 · 김상훈 · 고동진
이현승 · 신동욱 · 이종욱
김기웅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,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,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·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

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,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,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,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처분의 판단 기준,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대상·절차, 조치 및 그 조치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의 판단 기준 등 검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1조(사건처리절차 등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1조(사건처리절차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,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처분의 판단 기준,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<u>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제외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<u>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대상·절차, 조치 및</u>

<u>그 조치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